

# 彈力關稅制度的 內容과 運用方向

— 彈力關稅制度的 必要性을 中心으로 —

財務部 鑑定課 調査統計係長 李 揆 成

## 一. 彈力關稅制度的 意義

彈力關稅制度라 함은 關稅率의 變更 또는 關稅의 割増賦課의 權限을 一定한 範圍內에서 行政府에 委任하여 行政府로 하여금 受任된 範圍內에서 機動性 있게 關稅率을 變更하거나 또는 關稅를 割増 賦課할 수 있도록 하는 制度이다.

이러한 彈力關稅制度는 「代表없이 稅金없다」는 슬로건 아래 國會가 定한 稅率 및 租稅의 種目에 依하지 않고는 租稅를 賦課할 수 없다는 正統的인 租稅法律主義에 對한 하나의 例外 措置인 것이다. 그러나 彈力關稅制度는 正統的인 租稅法律主義에 對한 例外措置이긴 하지만 이에 正面的으로 衝突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왜냐하면 彈力關稅制度는 關稅率의 變更 또는 關稅의 割増 賦課의 要件과 限界를 法律로서 定하였기 때문에 稅率의 變更權이 全幅的으로 行政府에 移讓된 것은 아니고 同一物品에 對하여 複數의 稅率을 國會가 定하고 그 具體的 適用을 行政府에 委任한 것으로 理解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關稅는 財政需要의 充足을 爲한 單純한 國民負擔이 아니고 國內産業을 保護하는 役割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正統的인 租稅法律主義가 議會政治의 初期에 있어서 王權의 橫暴을 牽制하기 爲하여 定立된 歷史的 概念이라는 점과 오늘날 行政府의 機能이 夜警으로서의 機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積極的인 福祉의 向上에 있다는 諸點을 綜合的으로 考慮할 때 彈力關稅制度는 決코 租稅法律主義에 違

背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彈力關稅制度는 비록 그 要件과 限界를 法律로서 定하였다 하더라도 그 範圍內에서의 關稅의 彈力의 活用은 行政府에 委任되어 있음으로 租稅法律主義에 對한 例外的인 制度임에는 틀림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彈力關稅制度는 왜 必要한가를 考察해 보자.

關稅는 勿論 財政需要의 充足에도 그 目的이 있지만 激動하는 世界經濟의 거센 물결로 부터 國內産業을 保護하는 防波堤의 役割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貿易의 直接的인 制限의 緩和를 통한 貿易自由化를 指向하는 境遇에 있어서는 이러한 關稅의 役割은 더욱 加重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境遇 67. 4. 15 GATT(關稅와 貿易에 關한 一般協定) 加入을 契機로 貿易自由化의 世界的 潮流에 迎合하였음은 勿論 對內的으로도 第一次 經濟開發 五個年計劃의 成功的인 遂行과 第二次 經濟開發 五個年計劃의 꾸준한 推進으로 因한 急激한 經濟成長에 따라 새로운 國內産業이 登場함과 同時에 經濟構造의 變動에 따라 稅率間의 不均衡이 發生하고 있다. 이러한 經濟의 與件은 關稅에 依한 國內産業의 適期保護와 稅率間의 不均衡을 即刻是正할 것을 要請하고 있다. 또한 低物價國으로 부터 物品의 流入을 效率的으로 防止하며 物價의 調節을 行하고 나아가서 GATT等 國際機構를 통한 關稅交涉을 能率的으로 遂行하기 爲하여는 即刻的인 關稅率의 變更이 要請된다. 그런데 이러한 必要性에 對處하는데 있어서 國會의 立法節次를 거

後에措置하게된다면 失期할 憂慮가 있는  
다. 따라서 硬直의이며 煩雜한 立法節次 때  
1 惹起될 수 있는 失期의 危險性을 排除하는  
彈力關稅制度가 必要한 것이다.

## 二. 彈力關稅制度의 內容

이러한 必要性에 依하여 우리나라 關稅法에서  
1 擧하고 있는 彈力關稅制度의 類型은 不當廉賣  
上關稅(關稅法 第10條), 報復關稅(關稅法 第  
11條), 緊急關稅(關稅法 第12條), 相計關稅(關稅  
法 第13條), 制限的 關稅授權制度(關稅法 第15  
條), 關稅割當制度(關稅法 第16條)가 있다. 이  
1 1서 그 內容을 分說코져 한다.

### 1. 不當廉賣防止關稅

不當廉賣防止關稅란 外國의 Dumping으로 부  
國內産業을 適期에 保護하기 爲하여 基本關  
稅에 附加하여 賦課하는 關稅를 말한다,  
現行 우리나라 關稅法 第10條에는 不當廉賣防  
止關稅를 規定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그 內容  
을 살펴보자.

우선 不當廉賣防止關稅의 發動要件을 보면 첫  
는 不當廉賣된 物品의 輸入이 存在하여야 한다.  
기서 不當廉賣라 함은 正常價格보다 低廉하게  
國에 去來되는 것, 即 通常去來方法으로 一國  
에서 他國으로 輸出하는 物品의 輸出價格이 輸  
入國에서 消費되는 同種物品에 相應하는 價格보  
다 低廉한 것을 말한다. 둘째로 同種의 國內産  
業이 沮害되거나 沮害될 憂慮가 있어야 한다.  
기에서 同種의 國內産業이 沮害되거나 沮害될  
憂慮가 있다함은 이미 確立된 國內産業을 實質  
으로 해치거나 또는 害될 憂慮가 있는 境遇와  
規則 設立하고져 하는 國內産業의 確立을 實  
的으로 遲延시키거나 遲延시킬 憂慮가 있는  
遇를 말한다. 셋째로 不當廉賣防止關稅가 賦  
課될라면 當該 國內生産者의 申請이 있어야 한  
다. 따라서 國內生産者의 申請이 없으면 이는  
發動할 수 없는 것이다. 넷째로 不當廉賣防止關  
稅는 政府가 不當廉賣의 事實을 確認하고 이에  
따라 國內産業을 保護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 限하여 發動한다. 이 境遇政府가 不當廉賣  
의 事實을 確認하기 爲하여 必要한 때에는 海外  
駐在稅關公務員 또는 海外公館長으로 하여금 確  
認케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不當廉賣의 事實  
은 비록 確認될지라도 當該 國內産業을 保護할  
必要性이 없는 境遇 例컨대 當該國內産業이 國  
際競爭에서 優位에 있기 때문에 別다른 特別한  
保護措置가 不要한 境遇에는 이는 發動할 수 없  
는 것이다.

다음으로 不當廉賣防止關稅의 發動의 限界를  
살펴보자. 첫째로 不當廉賣防止 關稅는 無期限  
으로 賦課하는 것이 아니라 一定한 期間을 定하  
여 賦課하여야 한다. 即 이는 恒久的으로 存續  
할 수는 없는 것이며 必要한 最少限의 期間에만  
賦課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 不當廉賣防止  
關稅는 正常到着價格과 不當廉賣價格과의 差額  
의 限度內에서 賦課한다. 따라서 國內産業이 沮  
害된다 할지라도 그 差額 以上을 賦課할 수 없  
는 것이다.

이러한 不當廉賣防止關稅의 賦課는 大統領令  
의 定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짐으로 彈力關稅制  
度의 하나의 類型으로 存在하는 것이다.

이러한 不當廉賣防止關稅는 GATT 第6條에도  
規定되어 있는 制度로서 美國, 日本, 加奈陀等  
世界의 大多數 國家가 採擇하고 있는 制度이다.  
그러나 不當廉賣防止關稅를 濫用하여 不當한 關  
稅를 賦課하거나 不當廉賣關稅의 濫用은 貿易을  
沮害하는 要素로 登場할 要因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問題點을 排除하고 國際적으로 統一의  
인 不當廉賣防止關稅의 賦課를 爲하여 Kenedy  
Round 協商의 一環으로 非關稅障壁委員會에서  
“GATT 第6條 施行에 關한 協定案”을 마련하였  
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머지 않아 이 協定에 加  
入할 것으로 展望된다.

### 2. 報復關稅

報復關稅는 우리나라의 輸出商品 또는 船舶  
및 航空機에 對하여 不利한 取扱을 하는 境遇에  
關稅를 割増 賦課하는 것을 말한다.

現行 우리나라 關稅法上 報復關稅의 發動要件  
을 보면 첫째 우리나라의 輸出商品 船舶 또는

航空機에 대하여 不利한 取扱을 하는 國家가 存在하여야 한다. 둘째 그러한 國家로 부터 우리나라에 輸入되는 物品이 存在하여야 한다. 셋째 이러한 境遇 그 國家에서 輸入되는 全物品을 對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國家와 物品을 大統領令으로 定하여 그 範圍內에서만 賦課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報復關稅의 發動限界를 보면 그 物品의 課稅價格 相當額 以下の 範圍內에서 賦課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報復關稅制度는 世界各國의 大部分이 採擇하고 있으나 이의 發動의 例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왜냐하면 報復關稅의 發動은 關稅戰爭을 惹起시킬 可能性이 있기 때문이다.

### 3. 緊急關稅

緊急關稅란 外國에서의 價格의 低落等豫期치 못하였던 事情의 變化에 따라 特定物品의 輸入이 急增되어 國內產業에 重大한 影響을 줄 非常事態가 發生하였을 境遇賦課하는 關稅를 말한다.

現行 우리나라 關稅法上 緊急關稅의 發動要件을 보면 첫째 外國에 있어서의 價格의 低落 其他豫想하기 못하였던 事情의 變化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豫想하지 못한 事情이란 新發明 技術의 革新 運送手段의 發達等으로 因하여 價格이 低落하거나 供給能力이 向上되는 것을 말한다. 둘째로 이러한 外國의 事情變更에 따라 特定物品의 우리나라에로의 輸入이 急增되어야 한다. 셋째로 이러한 輸入의 增加가 우리나라의 同種物品 또는 이와 代替性이 있는 物品을 生産하는 產業에 重大한 損失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憂慮가 있어야 한다. 넷째로 緊急關稅는 우리나라 產業에 重大한 損失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憂慮가 있는 境遇일지라도 이의 即刻의인 對處가 必要한 境遇 即 緊急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만 發動할 수 있다. 換言하면 緊急關稅는 經濟非常權의 一種에 屬하는 것으로서 一般的인 事態에는 發動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緊急關稅의 發動限界를 보면 첫째 當該物品의 課稅價格과 이와 同種 또는 類似한 物品

의 國內都賣價格과의 差額에서 基本關稅率에 依한 關稅를 控除한 金額 以下の 範圍內에서 緊急關稅를 賦課할 수 있다. 即 緊急關稅의 行政府에 依한 賦課의 限界는

{(國內都賣價格-課稅價格)-基本課稅率에 依한 課稅}의 範圍內인 것이다.

둘째로 우리나라가 GATT의 會員國임으로 GATT 讓許稅率에 있는바 이에 對하여도 緊急關稅를 發動할 수 있다. GATT 讓許稅率에 對한 緊急關稅의 發動限界를 보면 讓許를 撤回하거나 基本關稅率(基本關稅率에 對하여 앞에서 言及한 緊急措置가 取해져 있는 境遇에는 緊急關稅를 包含하는 率)의 範圍內에서 讓許稅率을 修正하여 基本關稅率을 適用토록 하거나 修正後의 稅率에 依하여 關稅를 賦課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例示하면 稅番 0201-20 羊肉의 境遇 基本關稅率에 35%이며 GATT 讓許稅率에 25%이다. 이 境遇緊急關稅의 發動事由가 充足되었다면 政府는 첫째 이의 讓許稅率을 撤回하여 35%의 基本關稅率을 適用케 할 수 있고 둘째로 讓許稅率을 35%(基本關稅率)의 範圍內에서 修正하여 30%程度의 稅率을 適用토록 할 수도 있으며 셋째로 基本稅率 35%만으로도 國內產業 保護가 未洽할 때는 基本關稅率을 {(國內都賣價格-課稅價格)-基本關稅率에 依한 關稅}의 範圍內에서 引上하여(例컨대 60%) 그 範圍內에서 讓許稅率을 修正하거나(例컨대 50%의 關稅를 賦課) 또는 讓許를 撤回하고 緊急措置에 依하여 引上된 基本關稅率 即 60%를 賦課할 수도 있는 것이다. 셋째로 GATT 讓許稅率을 撤回하거나 修正하는 境遇에는 GATT會員國인 利害當事國과 協議하여 他物品에 對하여 撤回나 修正의 代償으로 讓許를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境遇에 行政府는 緊急關稅를 發動하여 이미 讓許한 物品에 對하여는 讓許稅率을 보다 더 引下하거나 또는 讓許되지 않은 物品에 對하여는 基本關稅率 以下로 引下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措置는 앞에서 言及한 緊急關稅의 發動要件을 充足시키는 것은 아니나 GATT 讓許品에 對한 緊急關稅의 發動에 對한 後遺症의 治癒策으로 一般的으로 認定되는 것이다. 넷째로 우리나라 商品의

出國에서 우리의 關心品目에 對한 GATT 讓免率을 撤回하거나 修正하는 境遇에는 이에 卽刻的인 報復措置로서 그 國家와 物品을 關하고 그 物品에 對한 基本關稅 以外에 그 品의 課稅價格 相當額의 範圍內에서 關稅를 果하거나 當該物品이 이미 讓許된 物品인 境에는 讓許稅率의 適用을 停止하고 基本關稅率 依하여 關稅를 賦課할 수 있는 이러한 措置 亦是 緊急關稅의 固有한 發動要件을 充足하는 것은 아니나 他國의 緊急關稅發動에 對한 對策으로 認定되고 있는 것이다. 卽 이 措는 緊急關稅의 意味보다는 오히려 報復關稅의 未를 보다 強熱히 풍기고 있는 制度이다.

그렇든 이러한 緊急關稅는 GATT 第19條에서 認定하는 制度이며 美國, 英國, 日本, 加奈等 世界各國의 大部分이 採擇하고 있는 制度다. 그러나 이러한 制度의 頻繁한 發動은 實을 障害하는 커다란 要因이 되고 있음으로 이 發動은 緊急한 非常事態에 限하여야 할 것이

또한 우리나라 讓許稅率의 撤回 또는 修正 卽히 他物品으로 報償하기 爲하여 또는 他國 우리나라 關心商品에 對한 讓許의 撤回 또는 正에 對한 報復措置로서 緊急關稅를 發動하는 例에는 必要한 最小限度에 그쳐야 할 것은 贅을 不要한다.

#### 4. 相計關稅

相計關稅는 輸出國에서 補助金 獎勵金 등이 直 또는 間接으로 交付된 輸入品에 對하여 그 競爭力을 減殺시키기 爲하여 賦課하는 關稅를 말다.

우리나라 現行 關稅法上 相計關稅의 發動要件 보면 첫째 輸出國에서 直接 또는 間接으로 定物品의 生産이나 輸出에 關하여 獎勵金 또 補助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둘째로 이러한 品의 輸入이 國內産業을 阻害할 憂慮가 있어 한다.

이러한 要件이 具備되면 그 對象國과 物品을 統領令으로 定하여 相計關稅를 賦課할 수 있 바 그 發動의 限界를 보면 相計關稅는 該當 助金 또는 補助金과 同額以下의 範圍內에서

賦課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相計關稅에 對하여는 GATT 第6條 에도 規定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世界各國에서 도 通例의으로 採擇하고 있는 制度이다.

#### 5. 制限的 關稅授權 制度

制限的 關稅授權 制度라 함은 一定한 法定의 要件下에서 行政府가 關稅率을 引上 引上할 수 있는 制度로서 彈力關稅制度의 代表的인 形態이다.

現行 우리나라 關稅法에는 引上和 引下의 境遇를 區分하여 制限的 關稅授權制度를 設定하고 있는 바 이에 卽히 論述코져 한다.

우선 引上의 境遇에 있어서 制限的 關稅授權 制度를 發動할 수 있는 境遇를 보면

(1) 國民經濟上 重要한 國內産業을 緊急히 保護할 必要가 있을 때

(2) 特定物品의 輸入을 緊急히 抑制할 必要가 있을 때

(3) 産業構造의 變動으로 物品間의 稅率이 顯著히 不均衡하여 이를 是正할 必要가 있을 때로 되어 있다.

또한 引上의 限界는 基本關稅率에 課稅價格의 100分의 50에 相當한 率(從量稅이 境遇에는 이에 相當한 關稅額을 加算한 率의 範圍內로 되어 있다. 이를 例示하면 稅番 5501—20 線綿의 境遇 基本關稅率이 10%임으로 制限的 關稅授權 制度에 依한 引上의 最高限은 60%가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制限的 關稅授權制度에 依한 引下의 境遇를 보면

(1) 物資需給에 重大하 蹉跌이 있거나 物價의 調節을 爲하여 特定物品을 緊急히 輸入할 必要가 있을 때

(2) 國內에서 生産되는 獨占 또는 寡占物品의 價格騰貴를 抑制할 必要가 있을 때

(3) 産業構造의 變動으로 物品間의 稅率이 顯著히 不均衡하여 이를 是正할 必要가 있을 때로 되어 있다.

또한 引下의 限界를 보면 基本關稅率에서 課稅價格의 100分의 50에 相當한 率(從量稅인 境

遇에는 이에 相當한 金額)을 減한 範圍內로 되어 있다. 그러나 基本關稅率이 100分の 50 以下 일 때에는 그 稅率을 減한 範圍內로 되어 있다.

이를 例示하면 稅番 5311—10 紡毛織物의 境遇 基本關稅率이 100%임으로 引下의 最下限은 50%인 것이다. 그러나 稅番 5301—10 原毛의 境遇 基本關稅率이 10%임으로 引下의 最下限은 —40%가 아니라 「0」에 그치는 것이다.

이러한 制限的 關稅授權制度는 租稅法律主義에 例外措置일 뿐만 아니라 經濟界에 미치는 效果도 클 것이 豫想됨으로 이의 發動에는 慎重을 期하여야 할 것이다.

制限的 關稅授權制度에 對한 各國의 例를 보면 다음과 같다.

### <美國의 制度>

#### 가. 通商 擴大法 第201條

1962年 7月 1일부터 1967年 7月 1일까지 外國과 通商協定을 締結하는데 있어서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大統領은 現行稅率의 變更 據置 無稅品의 據置等의 措置를 取할 수 있으며 關稅率의 變更에 있어서는 1962年 7月 1日 現在 稅率의 50%以內에서 引下할 수 있고 또한 1934年 7月 1日 現在 稅率의 50%以內로 引上할 수 있다.

#### 나. 關稅法上의 規定

1) 關稅法 第336條(內外 生産價格의 平準化)

##### ㉞ 品目 및 稅法의 變更

大統領 國會 및 關稅委員會의 要請과 特定輸入物品의 利害關係者(生産者와 輸入業者)의 申請에 對하여 妥當性이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關稅委員會는 特定輸入物品의 內外生産價格差를 調査하여야 한다. 調査結果 國內生産品과 主要競爭相對國과의 生産價格差가 있음을 發見할 때에는 大統領은 該物品에 對한 價格差額을 勘案하여 法定稅率의 上下限 50% 範圍內에서 關稅率을 變更할 수 있다.

##### ㉟ 美國國內販賣價格(A.S.P)의 變更

前項에 依한 調査結果 內外 生産價格差가 있음을 發見할 때에는 美國國內販賣價格를 基礎로 한 從價稅率을 提示하여야 하며 이러한 境遇의 關稅率은 法定稅率의 上下限 50%範圍內에서 變

更한다.

##### 2) 關稅法 第337條(輸入에 있어서의 不當去來)

不當한 輸入方法이 美國의 産業을 阻害하거나 獨占化시킬 憂慮가 있다고 大統領이 確認한 境遇에는 大統領은 關稅委員會의 不當如否調査와 公聽會를 통한 再調査結果에 따라 特定物品의 輸入을 禁止할 수 있다.

#### 다. 關稅法 第350條(貿易增進)

大統領은 美國產品의 外國市場擴大를 爲하여 外國과 貿易協定을 締結함에 있어서 上下限 50%의 範圍內에서 關稅率을 變更할 수 있다.

### <比律賓의 制度>

#### 關稅法 第401條(彈力關稅)

㉞ 大統領은 關稅委員會에 依한 調査와 國家經濟會議의 建議에 따라 關稅率의 變更이 國家經濟 公共福祉 및 國防上 有利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法定 關稅率의 50%까지 引下하며 5배까지 引上할 수 있는 權限을 갖는다.

㉟ 大統領은 關稅의 形態(從價稅를 從量稅로 從量稅를 從價稅로)를 變更할 權限을 갖는다.

### <뉴질랜드의 制度>

#### 關稅法 第124條(關稅率 變更權)

㉞ 總督은 다음의 境遇에 關稅率을 變更할 수 있다.

① 特定物品에 對한 現行關稅의 賦課 또는 免除가 一般的 公共利益과 뉴질랜드에서 營爲되고 있는 産業 및 貿易에 特別히 有害하거나 不當하다고 認定할 때

② 뉴질랜드產品이 他國에서 過度한 關稅를 支拂할 때

③ 뉴질랜드産의 特定物品이 他國으로 輸入됨이 禁止되거나 制限되어 뉴질랜드에서 營爲되고 있는 産業 및 貿易에 損害를 줄 때

㉟ 關稅率의 變更에 있어서 뉴질랜드에서 營爲되고 있는 産業 및 貿易을 保護하기 爲하여는 새로이 賦課되는 關稅는 賦課된 關稅額을 超過할 수는 없다.

## 6. 關稅割當 制度

關稅割當 制度란 特定輸入品の 必要輸入量의 內과 超過輸入量의 輸入間에 稅率의 隔差를 許 가능한 限 輸入數量을 一定한 水準에서 抑 制하는 二重稅率制度를 말한다. 卽 特定輸入 品의 輸入에 있어서 一定量까지는 低率의 關稅 賦課하고 그 以上の 輸入量에 對하여는 高率 關稅를 賦課함으로써 國內生産者와 消費者의 利害를 調整하는 關稅制度이다. 여기에서 必要 輸入量을 割當數量이라 하고 超過輸入量을 割當 數量이라 하며 低率의 稅率을 割當內稅率, 高 率稅을 割當外稅率이라 한다.

割當數量의 策定은 通常 一定期間內의 特定物 品의 國內需要量을 推定하여 同物品의 國內生産 量을 減하여 決定한다. 또한 割當數量의 決定 方法은 需給의 長期的 觀點에서 數量을 固 定시키는 固定割當과 需給의 變動을 勘案하여 若干 分期마다 決定하는 伸縮割當이 있다. 또 決定된 割當數量에 對하여 具體적으로 이를 實現시키기 爲한 方式에는 輸入業者의 輸入 順序의 順으로 割當하는 先着順方式과 割當數量 輸入業者를 輸入通關의 事전에 決定하는 事 前割當方式이 있다.

우리나라의 現行 關稅法上 關稅割當度를 보면 各國의 關稅割當制度 比較表

名	品 名	割當方式	備 考
國	크림 牛乳 家畜 生鮮 冷凍鮮等 과 크로바 種子 金屬洋食器	先着順 方式	關稅讓許와 免 責條項 發動時 採用
獨	撚糸織物 醫藥品 染料 포 리에스틸 樹脂 鐵鋼 亜鉛 알미 늬 石炭	事前割當 方式	
葡西	輓馬 球根 병아 리 감자 오토옥 수수 耐火煉瓦 鐵鋼	事前割當 方式	
本	니켈塊 五酸化 바나늄	事前割當 方式	

割當數量은 大統領令으로 定하게 되어 있으며 割當內稅率은 基本稅率로 하고 割當外 稅率은 基本關稅率의 100分の 50에 相當한 率(從量稅인 境遇에는 이에 相當한 關稅額)의 範圍內에서 定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關稅割當制度 의 施行에 있어서는 割當數量의 決定方法, 割當 數量의 配分方法 割當外稅率의 決定等の 節次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關稅割當制度는 GATT에서도 無差別 適用을 條件으로 認定하고 있는바 各國의 採擇 된 例는 아래表와 같다.

### 三. 彈力關稅制度의 運營

지금까지 우리는 彈力關稅制度의 意義와 그 內 容을 考察하였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彈力關稅制度는 租稅法律 主義에 對한 例外 措置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制度는 行政府가 專擔의 運營하는 것이 기 때문에 失期의 危險性은 排除되지만 拙速의 愚를 犯할 可能性은 없지 않은 制度이다. 따라서 彈力關稅制度를 合目的의 運營하기 爲하여 는 充分한 檢討와 慎重한 節次에 依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以下에서 關稅法 施行令에 規定된 彈力 關稅 制度의 運營方向을 살펴보자.

#### 1. 單力關稅制度의 運營方向

彈力關稅制度를 活用하여 特定物品의 基本關 稅率을 變更하거나 關稅를 加算 또는 引下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우선 主務部 長官은 當該物品 에 基礎調査를 行한後 財務部 長官에게 要請하도록 되어 있다.

主務部 長官이 調査하여야 할 事項은

- (1) 國內 需要量
- (2) 國內 生産量
- (3) 國內 生産價格
- (4) 主要 競爭相對國의 輸出價格.
- (5) 引上 또는 引下하고자 하는 關稅率
- (6) 基他 必要한 事項

例컨대 當該物品의 우리 나라에서의 附加價值

또는 代替性이 있는 物品의 需要量 및 生産量 또는 當該物品의 輸入動向等을 調査하여야 한다.

이러한 主務部長官의 要請을 받은 財務部長官은 또한 獨自的으로 이러한 主務長官의 基礎調査를 檢討하여야 한다. 이러한 檢討를 行함에 있어서 國內生産價格 및 主要 競爭相對國의 輸出價格을 關係機關으로 하여금 調査토록 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機關으로 하여금 調査토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財務部長官은 이러한 檢討함에 있어서는 財務部長官의 諮問機關인 關稅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檢討 結果 當該物品의 關稅를 引上 또는 引下할 相當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國會의 議決을 거친 後 大統領의 裁可를 얻어 그 內容을 大統領令으로 公告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보건대 彈力關稅制度를 運營함에 있어서는 充分한 檢討와 慎重한 節次를 거치게 되어 있음으로 拙速의 愚를 犯할 餘地는 極히 작아졌다 하겠다.

## 2. 關稅審議委員會

彈力關稅制度의 運營에 있어서 가장 中樞의인 役割을 하는 것이 關稅審議委員會이다. 이러한 關稅審議委員會에 對하여 以不에서 考察해 보자.

우리나라의 關稅委員會는 財務部長官의 所屬下에 있는 財務部長官의 諮問機關의 性格을 갖고 있다. 따라서 關稅委員會는 意思의 決定機關은 아닌 것이다. 關稅審議委員會의 構成은 財務部次官을 委員長으로 하고 經濟企劃院次官 法務部次官 農林部次官 商工部次官 保健社會部次官의 經濟部處를 中心으로 한 各部의 次官과 韓國産業銀行(總裁 그리고 韓國貿易協會會長 大韓商工會議所會長 韓國關稅協會會長의 業界의 代表와 財政經濟에 關한 學識 및 經驗이 豊富한 者中에서 財務部長官이 委囑하는 2人으로 構成되고 있다.

그리고 關稅審議委員會의 機能은 彈力關稅制度의 運營에 關하려만 財務部長官의 諮問에 應하는 것이 아니며 關稅法의 改正 即 基本關稅率의 變更과 關稅制度의 改善까지도 諮問에 應하

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關稅審議委員會의 適切하고 合目的的인 運營은 彈力關稅制度의 活用に 있어서 必要 不可缺의 要諦라 하겠다.

여기서 外國의 關稅委員會制度를 考察해 보면 아래와 같다.

### <美國 關稅審議委員會 制度>

#### ㉞ 委員會의 性格

獨立行政機關인 行政委員會

#### ㉟ 構成

㉞ 所屬: 大統領의 直屬

㉟ 構成: 大統領이 任命하는 委員 6名 事務局 職員 200餘名

#### ㊱ 機能

㉞ 大統領에 報告 및 勤告하는 事項

1) Escape clause(免除條項)의 調査

2) 内外生産原價差의 調査

3) 不公正競爭의 調査

4) 外國의 差別待遇의 調査

㉟ 大統領에 報告 또는 情報提供을 하는 事項

1) Parity Point 調査(1951年 通商協定延長法 第3條)

2) 關稅交涉資料의 提供(1948年 行正命令 第10082號)

㊱ 議會에 對하여 年1回 以上 報告義務를 지니고 있는 通商協定の 實施狀況에 關한 報告(1955年 通商協定延長法 第3條)

㊱ 財務部長官이 덤핑의 事實이 있다고 決定한 後 그의 덤핑에 依하여 國內産業에 損害를 주었거나 또한 確立이 遲延되었는지 與否에 關한 調査와 이 調査에 依한 裁定의 財務部長官에 對한 報告(1921年 덤핑防止法 및 1954年 稅關簡素化法 第301條)

### <日本 關稅審議委員會 制度>

#### ㉞ 審議會의 性格

大藏大臣의 諮問機關

#### ㉟ 構成

㉞ 所屬: 大藏性의 附屬機關

㉟ 構成: 大藏大臣 및 委員 45人 以內

## 機能

- ㉑ 大藏大臣의 諮問에 應하여 關稅定率法別表의 改正 其他 關稅率改正에 關한 重要事項을 調査審議함.
- ㉒ 諮問機關이므로 法的으로 大藏大臣이 委員會의 議決과 다른 決定을 行하여도 支障은 없으나 實題의으로 委員會의 議決은 充分히 尊重되고 있음.
- ㉓ 委員會는 大藏大臣의 諮問에 應하는 外에 關稅率에 關하여 大藏大臣에 建議할 수 있음. 建議案의 提出은 3人 以上の 委員의 同意가 必要하며 建議案에는 理由를 添付하여야 함.

## 部會

關稅審議委員會는 特定事項의 審議上 必要할 때에는 部會를 設置할 수 있음.

- ㉑ 構成: 會長이 指名하는 委員
- ㉒ 權限: 部會의 權限은 委員會의 議決에 따라 關稅率의 全面的 改正에 따른 大藏大臣의 諮問事項에 對하여 調査 審議하고 그 結果를 委員會에 報告되는 것이 通常이나 委員會가 特히 定한 境遇에는 部會의 議決로써 委員會의 議決에 代할 수 있음. 이것은 緊急 關稅部會에서 迅速히 處理를 하기 爲하여 定하여진 것임.

## <카나다國 關稅審議委員會 制度>

### 委員會의 性格

財務部長官의 要請에 依하여 調査報告를 行하는 諮問 機關

### 構成

- ㉑ 所屬: 財務部長官
- ㉒ 構成: 總督이 任命하는 議長 1名 副議長 2名 委員 2名

### 機能

- ㉑ 權限: 委員會는 必要에 따라 證人을 喚問하고 證言을 求할 수 있으며 證言 以外에 情報가 正當하다고 判斷된 境遇의 調査
- ㉒ 委員會의 調査事項

委員會는 財務部長官의 要請에 依하여 카나다의 產品 또는 輸入品에 關하여 다음 事

項을 調査. 또한 이의 結果를 財務部長官에 報告하여야 한다.

- 1) 原料品의 內外價格과 當該產品의 生産地에서 消費地까지의 輸送費
- 2) 國內 또는 外國에 있어서 實題的 生産費 및 同生産費의 內外價格을 均等化하기 爲하여 必要로 하는 稅率의 引上 또는 引下의 程度
- 3) 內外的 被雇傭의 勞動條件. 能率 및 賃金
- 4) 內外的 生産者 製造者 都賣業者 小賣業者 其他 業者가 받는 價格 國內에 있어서 生産費 및 消費者價格을 構成하는(또는 影響을 주는) 모든 條件
- 5) 外國과 比較한 國內의 生産 製造價格에 影響을 주는 모든 條件
- 6) 關稅 또는 國內 消費稅가 카나다의 産業 또는 貿易이나 消費者에 주는 影響

### ㉓ 其他 事項

以上の 外에 委員會는 總督으로부터 다음 事項에 對하여 調査할 權限을 附與받고 있음.

- 1) 關稅定率法 第14條에 關한 事項 即 一定 品目에 對하여 消費者의 利益에 害를 주는 製造業者間의 價格協定 團合 또는 共謀를 調査하는 것. 總督은 委員會의 報告에 依하여 必要한 措置를 取할 수 있음.
- 2) 貿易 및 商業에 關한 一般的인 調査委員會의 調査報告書가 提出된 境遇에는 財務部長官은 當該報告書를 議會開會中인 때에는 受領 後 15日以內에 閉會中인 때에는 次期議會開會後 15日以內에 카나다 議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 3) 訴願의 裁決

關稅委員會는 關稅法 消費稅法에 依한 訴願을 審査하고 裁決하는 權限이 있고 委員會의 裁決은 最後의인 것임.